

귀 농 어 · 귀 촌 활 성 화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3.3.28)·시행(‘23.9.29) 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함(시행령안 제5조의2)

1) 귀농어·귀촌 희망자 중 일정 정도 준비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귀농어·귀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을 정함

나. 개정된 법률의 조 제목을 인용하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시행령안 제18조제1호 및 제9호)

1) 제18조제1호 중 “정착”을 “등 정착”으로, 같은 조 제9호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로 일부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없 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귀농어업인에 준하는 지원대상)”을 “(귀농어업인·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2.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귀농어·귀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제18조제1호 중 “정착”을 “등 정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귀농어업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u>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u>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귀농어업인·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신 설>	1. <u>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u>
<신 설>	2. <u>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귀농어·귀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u>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 귀촌인 <u>정착</u> 지원에 관한 사무 2. ~ 8. (생략) 9. 법 제16조에 따른 <u>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u> 대한 우대지원에 관한 사무 10. ~ 15. (생략)	----- ----- ----- ----- ----- ----- ----- ----- -----. 1. ----- ----- <u>등 정착</u> ----- -- 2. ~ 8. (현행과 같음) 9. ----- ----- <u>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u> ----- ----- 10. ~ 1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연 락 처	(044) 201 - 1539